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- 호

『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7월 31일

인천광역시의회의장

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」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 만료로 인해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
- 나. 통행료가 연장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유효기간을 개정하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·용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」 유효기간을 2013년 3월 31일에서 2016년 3월 31일로 변경함
(안 부칙 제3998-1호 제2항)
- 나. 유효기간 부칙 조항 정비(안 부칙 제4354호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: 440-6242)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440-8766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3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3998-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“2013년 3월 31일”을 “2016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조례 제4354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(제3998-1호)	부칙(제3998-1호)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<u>2013년 3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② ----- <u>2016년 3월 31일</u> -----
부칙(제4354호)	부칙(제4354호)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<u>2013년 3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<u><삭 제></u>